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79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 김위상 • 김미애 • 김형동

우재준 • 이인선 • 김승수

임이자·서범수·김소희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

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 와"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제5조(임원) <u>①</u>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		
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u>내의 이사와</u>		
1명을 둔다.			
<u><신 설></u>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u>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u>		
	<u>으로 한다.</u>		